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9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 상정일자 :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0월 12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소관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5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2개 장 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1장은 1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연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1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4조제1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총무과

- 제2장은 4개 조례에 대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는 것임.

연번	조례명	관련 조·항·호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	미연에	미리	도시계획과
2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사기양양과	사기를 드높이고	일자리노동정책과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통리한다	총괄한다	예산담당관
4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사기양양 및	사기를 드높이고	사회재난과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제정조례안은

- ▶ 조례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조례안은 본칙 2개장 5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장은 1개 조항으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6. 4.26.)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연번	조례명	조항	현행	개정안
1 건				
1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4조 제1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 안 제2장은 4개의 조항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연번	조례명	조항	현행	개정안
4 건				
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	미연에	미리
2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기양양과	사기를 드높이고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통리한다	총괄한다
4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기양양 및	사기를 드높이고

- ▶ 이 제정 조례안은 미 정비된 5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입법의 신속·편의성 제고와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법 적합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